

지정종돈장 인정 규정

- ◆… 본회는 지난 12월18일 영동 반도 유스호스텔 에서 임원·지부장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
- ◆… 지정종돈장 인정 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
- ◆… 다음은 이날 통과된 지정종돈장 인정 규정 전문이다. <편집자 주> …◆

제 1 조(목적)

본회는 양돈산업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유도하여, 종돈개량속도를 증진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하며, 종돈의 수급조절기반 조성으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종돈장 인정사업을 실시한다.

제 2 조(구분)

지정종돈장이라 함은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종돈장과 회사, 조합등 법인이 경영하는 종돈업 등록이된 종돈장으로 다음 3종류로 구분한다.

- ① 일반 지정 종돈장
- ② 우수 지정 종돈장
- ③ 특별 지정 종돈장

제 3 조(인정기준)

지정 종돈장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본회 도협의회 회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 회장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반지정 종돈장

- 가. 번식에 사용하고 있는 혈통등록이 된 종모돈 3두와 종빈돈 20두 이상을 보유하고 이중 종빈돈 5두 이상이 순종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
- 나. 종돈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농장.

- 다.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종돈 사육경력이 2년 이상인 우수한 사양기술보유자.
- 라. 본회가 주최하는 강습회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

2. 우수지정 종돈장

- 가. 번식에 사용하고 있는 혈통등록이 된 종모돈 5두와 종빈돈 30두 이상을 보유하고, 이중 종빈돈 10두 이상이 순종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
- 나. 농장검정을 실시하고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 연간 10두 이상을 출품, 이중 50% 이상이 검정에 합격된 농장
- 다. 종돈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며 최근 1년이상 법정 전염병 발생이 없는 농장.
- 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종돈사육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사양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자.
- 마. 본회가 주최하는 강습회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

3. 특별지정 종돈장

- 가. 번식에 사용하고 있는 혈통등록이 된 종모돈 8두와 종빈돈 50두 이상을 보유하고 이중 종빈돈 20두 이상이 순종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

- 나. 농장 검정을 실시하고 공인 종돈능력 검정소에 연간 20두 이상을 출품, 이중 60% 이상이 검정에 합격된 농장.
- 다. 종돈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며 최근 2년이상 법정전염병 발생이 없고, 종돈 개량을 위한 설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장.
- 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종돈 사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사양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종돈개량 실적을 갖고 있는 자.
- 마. 본회가 주최하는 강습회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

제4조(인정기준의 예외)

당해지역의 농업 경영규모와 사육구조 등의 관계로 제3조에 의한 인정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3조의 기준에 관계없이 중앙인정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지정 종돈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인정기간)

지정종돈장의 인정기간은 당해 연도말까지로 하며 매년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인정회비)

지정종돈장으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구분에 따라 소정의 인정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지정종돈장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정 종돈장 인정 심의 위원회를 둔다.

1. 중앙심의회위원회
2. 도심의회위원회

제8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이내로 구성한다.
 - ① 중앙심의회위원회-본회 회장이 위촉

② 도심의회위원회-도협의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위촉

2. 중앙심의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회장을, 도심의회위원회 위원장은 도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인정절차)

지정 종돈자 인정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우수지정 종돈장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는 자는 매년 1월말까지 도협의회 회장에게, 특별지정 종돈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동기간에 본회 회장에게 소정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일반·우수지정 종돈장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도협의회 회장은 소정의 조사와 도심의회위원회 심사를 거친후 그 조사결과 및 추천서와 인정 신청서를 2월말까지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및 추천서와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본회 회장은 이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도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특별지정 종돈장 신청을 받은 본회 회장은 소정의 조사와 중앙심의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3월말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교부)

1. 본회 회장이 인정한 지정 종돈장에 대하여는 소정의 인정서와 휘장 및 입간판을 교부한다.
2. 본회는 당해도에서 발생한 인정 회비의 일부를 당해 도협의회에 교부해야 한다. 단, 특별지정종돈장 인정 회비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제12조(표식)

1. 지정 종돈장으로 인정된 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의 혈통등록 증명서에는 소정의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2. 지정 종돈장으로 인정된 농장에서 사육되는 능력 검정돈에는 본회 회장이 정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제13조(보고)

지정종돈장으로 인정받은 자는 매년 당해년도 종돈의 번식성적과 경영개요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익년 1월말까지 도협의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신규 지정 종돈장은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인정취소)

1. 본회 회장은 지정종돈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제 3 조의 인정기준에 위배될 때
 - ② 제13조에 의한 보고를 이행치 않을 때
 - ③ 제 6 조에 의한 인정회비를 납부치 않을 때
 -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정종돈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정 종돈장이 인정을 취소당한 때에는 즉시 간판을 본회로 반납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 종돈장

130일 → 90kg, 등지방 1.5cm라면!

우리는 수입원종돈만을 생산하는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엄격한 자체선발을 거쳐 자랑스러운 돼지만 판매합니다.

정원 종돈장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산1-115번지
분양사무실 : 동물약품 정약원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25-7번지 ☎ 32-1250
대표 : 수의사 김 태 현

